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의 3법 입법 토론회

11/12(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례발표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사례발표2 DLF, 라임 등 대규모 금융피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례발표3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서치원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사 회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

발 제 1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발 제 2 변용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토 론 1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토 론 2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프로그램

국회의원 및 단체별 축사

사례발표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협의회 대표

사례발표2 **DLF, 라임 등 대규모 금융피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례발표3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서치원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사회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

발제1 **법무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발제2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지정토론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목차

사례발표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협의회 대표	15
사례발표2	DLF, 라임 등 대규모 금융피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19
사례발표3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서치원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27
발제1	법무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31
발제2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59
토론1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69
토론2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75

인사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어려운 와중에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 각계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소비의 형태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운동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재점검하고, SNS를 통한 허위·과장광고와 배달전문점 시대의 위생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옥시'의 기습기 살균제 참사,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는 집중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저는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했습니다.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부당한 이득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사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힘입어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저 역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인사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알차고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신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 국회의원님과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위,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입법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다수의 소비자는 입법적 미비로 인해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도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억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발암물질 생리대 사건, 연이은 주행 중 화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 수입 자동차 사건 등 집단적 피해를 빈번하게 겪고도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금융 사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피해범위가 과거 소비재 산업에서 금융 등의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국회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해 개별 소비자의 구제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님과 정부입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 및 증거개시제 도입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안에 대해 재계와 일부 시민사회의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남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2005년에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처음엔 남소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시행 후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는 등 오해와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열린 입법 토론회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계와 각 계각층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입법적 고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및 증거개시제 도입 관련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회의원 김종민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의 성장은 책임과 같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부터 생각하면 천지개벽 수준이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와 비교해도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GDP는 1995년의 4배가 넘었고, 소득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간에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등을 겪었지만, 유래가 없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주식 시가총액만 봐도 1995년 대비 1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많은 나라와 기업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한국은 어느덧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의 위상 역시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달라지지 않거나, 너무 천천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책임감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성장했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이 그 정도로 성장했는지 의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연일 드러나는 대규모 금융피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 포털의 개인정보유출, 호날두 노쇼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징벌적손해배상제)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집단소송제)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토론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입법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걸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피해자분들이십니다. 용기 내서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회의원 박주민

인사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지난 2017년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오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난 오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현실은 집단소송법이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집단소송법 대표발의자로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법사위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이 공약한 집단소송제가 모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은 당시 여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처리되었습니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일피일 입법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소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건강피해 95만 명, 사망자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이자 인재였지만,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 기업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이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다시금 입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이자 집단소송법의 대표발의자로서 오늘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를 반드시 진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피해 사례를 직접 말씀해주신 조순미님을 비롯하여 발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회의원 백혜련

인사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의원님, 기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량생산·대량유통·대중소비 확산 과정에서, 기업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라돈 매트리스 사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가짜 백수오 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등 대규모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

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원인규명과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2011년 공론화 되었지만, 2019년에야 수사가 마무리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당장이라도 회사 문을 닫을 것처럼 반대하지만, 오히려 각자 지금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규모 집단피해를 야기할만한 점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시장에 흑시 있을지 모르는 부주의와 악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회의원 오기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순미 /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기 위해 소비자권익3법인,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의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94년 전세계 최초로 한국 대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편리한 사용으로 내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가족의 행복한 하루를 보 낼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그즈음 대기업들이 뛰어난 대형마트에서 판매 시작과 맞물려 근거없는 내용물이 획기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제품은 마트와 동네슈퍼에서 앞다투어 판매되었습니다.

생활 화학제품인 가습기살균제는 유해성 검증이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임없는 과 정들로 아무런 제재없이 주변의 어린아이, 산모, 노약자들이 차례로 쓰러졌고 더불어 사망자도 많았을텐데 오래된 시점으로 그 수치는 판매량에 비례한 예측치로 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된 원료물질로 논란이 되었던 PHMG.CMIT/MIT 등은 사람에게 쓸 수없는 물질로 **산업용살충제**이며 수영장과 카페트,

물탱크 청소에 사용되는 물질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정해져 있으며 흡입시 인체에 유해함과 생명의 위독성을 연구사례를 통해 규제되어있었 음에도 이런 물질을 손쉽게 들여와서 다른물질들과 섞어서 만들어 더욱 독한 독극물이 되어 가정집과 병원, 군부대, 요양원,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많은 곳에서 쓰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는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으로 유명인이 좋은내용으로 광 고를하고 판매하고 있었으니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구매를 하고, 기업은 선의의 국 민들의 귀중한 돈과 생명을 갈취한것이다. 돈에 눈이 멀어 뻔뻔한 가해대기업,담 당사,원청업체가 일을 준 하청업체,무조건 믿고 의심없이 팔기만한 판매업체 그렇 다면 **국가,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에는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안전성 검사를 심사했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런저런 법이 있었음에도 사각지대로 만들어 방치하여 필요한 법이 없었기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방치수준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거짓도 가려질 수는 없는 법, 쌓였던 문제가 **2011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산모와 신생아의 원인미상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 SK유공의 판매 출시 이후 **2020년 10월 말현재 피해신청자 6,892명. 이 중에서 고인이 되신 사망자는 1,566명**입니다. 전국표본 조사를 통해 본 피해는 **노출인구 627만 명, 건강피해 67만 명, 사망자는 만 4천 여명** 가량으로 추정합니다. 가슴기살균제의 원료공급, 제조, 판매에 관련된 기업은 거의 100여 곳이며 48곳이 가슴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된 제품 갯수는 약 995만 여개**입니다. 이런 참사가 지속되는 사이에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기업 하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연구자료 등을 내놓고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 다.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국감, 공정위, 법원 등은 피해자, 즉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지금에서라도 더이상 이 나라에 **억울한 죽음이 묻히고 인간의 윤리마저 버린 돈을 쓸어가며 부를 축척해가고 근로자들의 개선되지 않는 환경과 처우, 비정규직으로 뽑아 부당한 기회로 인한 노동의 상실로 근로자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기업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고의적으로 일으켜 많은 숫자의 국민을 죽음과 고통으로 밀어넣은 대기업은 현재 법원에서의 처벌수준과, 벌금, 처벌 범위가 미약한 정도가 표현키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고의적 방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대기업의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적입법으로 소송의 남발 우려로** 변명을 표시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발전된 기업의 양심적 윤리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들이 자진해서 성숙한 기업의 모습으로 입법 제안이 되는 날이 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만10년째 투병으로 모든 것 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증피해자가 되어 하루하루 삶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제 그마저도 몸이 망가져 무너져 힘든상황 입니다. 작년 청문회와 청와대 앞 시위를 끝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변하는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저에 앞서 세상을 떠나신 피해자, 근로자, 이 나라의 억울한 부모, 자식들께 죄송한 자괴감이 듭니다. 나아지는 사회를 이루는데 **바다에 물 한컵 붓는** 느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 **기회가 왔고 여러분의 뜻이 모여졌습니다.** 착한 국민들의 눈과 입에서 더 이상 피눈물과 곡소리가 멎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DLF · 라임 등 대규모 금융 피해 (사모펀드 사태)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2019년 9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F(파생결합펀드)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고, 이어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사 펀드가 환매중단 되면서 펀드 돌려막기 등 심각한 사기가 밝혀졌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음.

20.8말 현재 환매 연기중이거나 예상되는 펀드는 50개 운용사의 568개 펀드로 총 6조 7,689억 원임. 20.8말 현재 주된 환매연기 펀드로는 라임(1조 4,651억원), GEN2펀드(1조 805억원), 디스커버리(3,124억원), 알펜루트(3,686억원), 옵티머스(5,151억원), 팝펀딩(1,375억원), 호주부동산(2,420억원) 등 총 6조 7,689억 원임.

1. DLF(파생결합펀드)

‘19.8.7. 獨, 英, 美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 원이 판매되었음. 19. 9.25 DLF 잔액은 6,723억 원이며, 이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하였고, 20. 6월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평균 40%, 하나은행은 71%가 손실되었음.

DLF는 도박에 가까운 상품이고, 그것도 불공정한 도박 상품임. DLF는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 미국 CMS 금리의 상승 및 하락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으로, 원금 손실은 100% 날 수 있는데 반해 수익은 연 4% 내외에 불과하며, 손실배수는 250배나 됨. 특히 DLF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안전자산 선호 고객들’이 이 상품을 4% 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하여 만들어지고 판매하였으며, 심지어 판매사인 두 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상품판매를 강행하였음.

더 큰 문제는 두 은행은 이 위험한 조건을 고객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런 도박 상품을 “은행이 독일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면서 예금처럼 판매하였음.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였으며, ‘원금손실 확률 0%’를 판매 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하였음. 결국 피해자 중에는 100% 원금 손실을 입은 가입자가 발생하였으며, 가입자 중에는 일반인(개인 3,004명, 가입금액 6,480억원)이 대부분(92.6%)을 차지함. 이 중 1억 원대 투자자(65.8%)가 가장 많으며, 3억 원 미만 투자자가 대부분(83.3%)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함.

2. 리임펀드

2019. 10.1~8. 리임자산운용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음. '19년 말 기준 리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그와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1조 6679억원(개인 4035명 9,943억원, 법인 581개사 6,736억원)임. 리임 판매사 중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3개 판매사가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함.

□ 금감원 분조위, 무역금융 분쟁조정(4건) - 18.11월 이후는 투자원금 전액배상 결정

20년 7월, 무역금융 분쟁 조정에서, ‘18.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투자원금 전액배상 결정임. 판매사는 한 차례 연장 끝에 2020. 8.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함. 판매사 수용으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발생(1천 6백억원, 무역금융펀드 중 55%)하였음.

3. 옵티머스펀드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음.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검찰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음.

'20.7.21. 현재 옵티머스의 펀드는 46개, 5,151억 원(설정원본)으로 이 중 24개 펀드, 약 2,401억 원이 환매 연기 중인데, 나머지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회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추정됨. 편입 자산의 대부분(98%)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원, 권면액 약 5,095억원)로 구성되었으며, 사모사채는 씨피엔에스(2,052.7억원), 아트리카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이 발행하였음.

피해자는 전체 1,166명으로, 개인은 982명, 법인은 184명이며 투자금액은 개인이 2,404억원, 법인이 2,747억 원임. 판매사 중 NH투자증권이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설정원분)을 판매하였고, 그 뒤로 하이 325억원, 한투증권 287억원, 케이프 148억원 등임.

4. 피해자 사례

1) [DLF 사례] 80대 고령 치매환자에게 상품 가입(우리은행, 가입금액 1억 1천만 원)

2015년부터 환청이 발생하여 2016. 5월 병원 진단결과, 주상병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부상병 파킨슨 증후군으로 최종진단 받은 바 있고, ‘2016년 실시한 검사에서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주로 저하된 치매로 확진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치매 치료중임. 피해자는 30여 년간 우리은행과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2004년 비과세 연금신탁상품(안정형) 1건(15백만원)에 가입한 경험 외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없었음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문 중 발췌>.

2019. 5. 우리은행은 80세가 넘는 초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도 DLF를 판매함. 상품설명도 6분~7분 정도고,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우리은행 내규까지 위반하면서 고령투자자 보호는 외면한 채 피해자가 가족의 조력을 의도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음. 따라서 이는 가입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은 물론 계약무효임.

■ 금감원 분조위 - 80% 배상 결정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20%를 과실 상계 함. 과실 상계의 근거로, “원칙적으로 투자결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30여 년간 은행거래를 해 왔던 신청인으로서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의 경우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었음.

2) [라임 사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무역금융)

A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간 정기에금에만 가입해왔는데, '18.11월 정기에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하였고, 금투회사 직원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였음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76%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금투회사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장학재단이 기본재산(1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한편,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재원인 기본재산이 초고위험 금투상품에 가입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던 은행직원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 해주었음 <출처 : 금감원 분조위 전액배상 결정 보도자료>

■ 금감원 분조위 - 가입금 전액배상 결정

3) [라임 사례] 중국교포,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6억원 가입(무역금융 CI, 판매사 신한은행)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남, 51세)는 하얼빈이 고향인 중국교포임. 예전 직업은 한국에서 중국음식점을 하셨는데 2014년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손상을 입고 오랫동안 수술과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음.

2018년 초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약 6억원이 통장에 들어오자 당시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 일산 암센터 지점에서 신한PWM 라페스타 지점으로 연결하여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였음. 처음에는 1년 6개월(2019년 7월 만기) 정기에금을 가입하였고, 그 정기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7월초가 되자 PB는 7월 18일부터 설정되는 라임CI펀드에 가입하라고 독촉하였음. 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너무나 끈질긴 가입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음. 가입당시 이 금액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생계비이므로 무엇보다도 원금보장이 중요하다는 걸 매우 강조하였고, PB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험에 들어있어 매우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였음.

피해자 부부는 가입 당시 중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자 은행PB가 “7월 말에 장모님이 대리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 부부는 7월초 귀국하면서 PB의 제안을 따를 계획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였음. 그러나 중국에 돌아간 이후 다시 연락 온 PB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와서 가입해야 한다”며 “설정일도 18일이 아니라 23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결국 피해자 부인이 하루 당일치기로 한국에 들어

와 이 펀드에 가입하였음. 참고로 영주권자인 본인이 아닌 부인 명의로 가입하게 된 이유는, PB가 “부인이 중국인(F-2비자)이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임. 부인은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글도 서툴러 원금 보장되는 예금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였고, 중국에서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소식을 접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다 이번 10월 23일에 귀국하였음. 또한 가끔 은행PB와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민원 접수 시에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음.

4) [라임 사례]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안전하고 사실상 확정 금리(대신증권)

2017년 12월 중순 3억을 예치할 목적으로 대신증권 반포 WM점을 방문하여 여직원에게 ‘안전하고, 추가 불입이 가능하면서 1~2년 후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문의하였더니, 대신증권 PB(당시 팀장, 현재 압구정 지점장)에게 안내해 줌. PB는 “확정금리지만 법령상 확정이라는 용어는 못쓴다”면서 “연 8% 준 확정금리이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하면서 가입권유하여 가입하게 되었음.

□ 사모펀드 중복 가입 피해자

■ 우리은행, DLF와 라임 피해자 사례 - 남편 사망에 따른 유산과 보험금

* DLF 1억(2019. 4.30 재 예치) - 손실율 46%

* 라임 Top2 2억2천 2019년 4월1일 예치, 교보 40% 기지급. 라임 손실 1억 2천 6백

외국 근무하는 남편과 사별 후, 2017년 귀국해 평생 펀드나 주식을 모르는 가정주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가 아닌 은행은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고 pb를 신뢰했습니다. pb는 (제가) 이사 예정이란 걸 알고 있었음에도, ‘라임은 절대 원금손실 없는 안전한 6개월짜리 3% 확정이자 상품’이라며 통장겉면에 만기 10월24일이라고 싸인펜으로 써주기까지 했기에 예금이라 생각하고 가입했고, 이후 DLF까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나 설명서 한 장 없이 너무 쉽게 가입시켰습니다.

이사를 위해 6개월 만기로 알고 가입한 두 상품 때문에 이사는 무산되고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본 저는 충격으로 심한 스트레스성 피부염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1년 넘게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말과 상식이 통하는 내 나라에서 사별의 슬픔을 뒤로하고 첫 발을 내디뎌 보기도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 아무 의욕

도 없고 살아갈 대책도 없습니다. 남편이 대학생 아들들을 위해 남겨준 마지막 생존자금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저는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죽고만 싶습니다.”

■ 신한은행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펀드 피해사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인 신한PWM에서 은행 PB가 고위험 사모펀드를 무작위로 권유해서 피해를 입었음. 그 중 18년 9월에 켄투우리코코DLS는 가입당시 PB가 안전한 우리은행 채권이라고 권유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은행 채권을 편입한 사모펀드 상품이었음. 심지어 PB는 운용사나 발행사에 대한 설명이나 레버리지 유무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은행PB가 권유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증권사) 상품이라는 것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20년 7월 환매중단을 알게 되었음.

한편 19년 5월에는 신한은행에서 라임CI펀드를 권유하여 가입하였는데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모르던 나에게 “매우 규모가 크고 유명한 자산운용사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하였고, 라임사태가 터진 20년 1월에 은행PB는 바로 책임 회피를 위해 전근을 가버렸음.

□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 사례

피해자 대부분은 하나은행을 10년 이상 장기거래 해 온 60세 이상 노인들로, 손실 난 돈은 노후자금임.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을 불확실한 곳에 맡겨두기 싫어, 안정적인 은행에 가입. 그러나 피해자들은 펀드가 뭔지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그저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되는 안정적 상품이니 은행만 믿고 맡기시라”는 말에 노후자금을 맡겼음. 한 70대 노인은 좋은 상품이라는 은행의 말에 본인과 아들, 딸까지 소개하여 가족 단체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어 괴로움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어렵게 동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다수 존재함. 단기 거치할 회사 자금인데, “1년 1개월 무조건 조기 상환된다”는 은행의 말을 듣고 가입함.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당장 거래처에 쥐야할 돈이 없어, 사업을 파산하신 분도 있음. 또한 피해자 중에는 전세자금을 잠시 거치했다가 어려워진 한 젊은 주부도 있음.

안산소협 홈페이지 개인정보 판매사건 집단소송 경험을 중심으로

서치원 /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 원고 모집과정

- 2015. 1. 검찰 공소제기
- 2015. 6. 원고 모집(사전에 분쟁조정 신청하였으나 불참으로 결렬)
- 2015. 7. 소장 제출(원고 425명)
- 원고모집시 필요서류 파악-안산소협 소속 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길거리 홍보 및 전화상담 등 통해 접수-접수된 서류 확인 및 입금확인(참가비 1만원, 소송 실비이며 변호사 보수 없음)-최종 원고명단 작성(인장날인 개선 필요. 3일 결림)

2. 재판 경과

- 공소제기 후 1,2심 무죄(홈플러스의 회원정보, 경품응모자의 응모권 기재정보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동의없이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14회에 걸쳐 전담부서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지속해왔음. 이에 대해 하급심은 제공동의란이 구분되어 있다거

- 나 약관이 식별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부정하였음)
- 2017. 4.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mm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후 2017. 7. 안산지원 1심 전부 승소(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된 것인지가 다투어졌는데,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개인정보 파일을 통해 보험사DB에서 확인된 사람은 4명에 불과. 약 200여명에 대해서는 파악할 자료가 없음. 이에 대해 1심은 홈페이지가 증거우위에 있음에도 제3자 제공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3자 제공이 추정된다고 판시)
 - 서울고법 2심 일부 패소(1심에서 다투어진 약 200여명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제3자 제공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 선고)
 - 대법원 계속중(홈플러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 이후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입증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리다툼)

3. 재판진행의 어려움

- 소장 제출단계에서 원고 누락, 오기 등 있었으나 이것이 판결선고시까지 발견되지 않아 판결문에 누락, 오기 된 사례(원고 경정이나 판결문 경정 등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항소심에서 소취하하였으나 애초에 소제기된 바도 없는 것)
- 증거확보의 어려움(형사기록 열람시 공소장 별지 엑셀파일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종이로 복사하는 경우 식별이 불가능.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본사를 찾아 수만건을 직접 열람한 후 그 중 원고로 파악되는 사람만 파일명, 순번을 기재하여 특정-이 과정이 약 1주일 걸림. 또한 회원가입시나 경품응모시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함. 또한 형사 1심판결 선고 후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알기도 어려움)

- 당사자 소통의 어려움(패소한 원고들에 대해 항소의사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등을 안내하나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며 연락불통인 경우도 빈번함. 회원가입 여부나 경품응모여부가 당사자로부터 확인 어려움 경우 다수 있었으나 피고협조로 정리됨. 이후 승소판결 확정시 배분문제...)

4. 최근 사례

- 최근 안산소협은 자동차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홍보의 제한, 참가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임.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나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예정 (소액사건은 판결이유 기재생략 가능)
- 개인정보 판매와 달리 사안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의 참여도는 저조해짐. 그러나 상당수 집단소송 사안은 쟁점이 복잡다기하고 증거자료의 편재가 심한 사안임. 이러한 사안일수록 집단소송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거꾸로 되어 있음

발제 1

법무부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임철현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1. 「집단소송법안」

I

추진 배경

- 다수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
- 현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정보처리의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소송부담 · 실익 등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 ·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사회 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

II

집단소송제도의 의의

- 피해자 일부가 제기하여 대표당사자로 수행한 소송으로 제외 신고*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 *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Opt-out)
- '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
 - * 공시의무 위반(주요사항보고서 제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Ⅲ 집단소송법안 개요

-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증거개시제 · 국민참여재판 반영
- 총 8개 章 · 127개 條 · 부칙 3개 條

구 분(법 목차기준)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 소송허가 요건 ■ 소송허가재판 절차 ■ 제외신고
제3장 소송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답변·석명 ■ 자료등 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 판결의 효력(제외신고한 자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에 효력)
제4장 소송 전 증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이하 “소송 전 증거조사”) ■ 증거유지명령
제5장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건(집단소송 허가결정 있는 사건) ■ 배심원 선정 절차 ■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제6장 분배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절차
제7장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규칙 위임
제8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임수증재죄 등 형벌·과태료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및 적용례(기존 사건에도 적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IV

집단소송법안 규정 내용

[1] 집단소송제 전면 · 일반적 도입

-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도입(제정안)
 -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
- 제정안 제명 및 목적조항 마련

■ 「집단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이에 관한 재판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 피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집단소송 소 제기 및 소송허가 절차

- '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구조 · 규정을 바탕으로 하되, 시행과정에서 실효성 제고 위해 꾸준히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①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 “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의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개선하고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실효성 제고 위해,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본안에서 다투도록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으로 분쟁해결 지연이 끊임없이 문제되는데 반해,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불허가로 반복·확정된 사례 없는 점을 참고(붙임, 현황 참조)

②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완화

- “3년 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삭제

③ 집단소송 허가요건 개선

- 집단소송 허가요건 합리화

집단소송 허가요건

구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소송허가요건	① <u>구성원 50인 이상</u>	(유지)
	② <u>피고 증권 총수 1만분의 1 소유</u>	삭제
	③ 법률상·사실상 쟁점의 공통	(유지)
대표당사자 요건	④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익보 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	(유지)
	⑤ 대표당사자·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흠결의 부존재 등	(완화)
	<u>경제적 이익이 큰 자 등</u>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	“ <u>경제적 이익이 큰 자 등</u> ” 예시문구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	삭제
관할	<u>피고 보통재판적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u>	<u>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관할 인정</u> (<u>고등법원 소재지 본원 관할 · 이송 인정</u>)
소송대리인 선임의무	원고· <u>피고</u> 변호사 선임 강제	<u>피고 삭제</u>
증권관련 집단소송 적용대상 증권	<u>주권상장법인 발행 증권 한정</u>	삭제
인지액 상한	5,000만원	(현행 유지)
허가 불복 여부	즉시항고 가능	<u>불복 제한</u>

④ 광고방법 개선

- 집단소송 공고 비용을 경감*하고 공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 광고 외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집단소송 소 제기 시 인지대 및 공고비용을 예납해야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전 국민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야 한다.

⑤ 소송허가 재판에서의 증거조사 및 증거개시 특례 반영

- 소송허가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안재판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함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적용

※ 본안 전 증거조사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p>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④ 당사자는 소송허가 재판 중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 신설 ></p>	<p>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④ (좌 동)</p> <p>⑤ 제4항이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 제43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한다.</p>

[3] 소송절차 : 주장 · 입증책임 경감 특례

- 증거의 구조적 편재 해소 위해 주장 · 입증책임 경감 특례 마련

① 주장책임 경감

- 대표당사자는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특칙 마련

제정안
<p>제32조(주장 · 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 · 해명하여야 한다.</p>

② 석명 등의 특칙

- 상대방이 답변 ·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 구문권, 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근거 마련(「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137조 및 제140조 준용)

제정안

제33조(석명 등의 특칙) 법원은 상대방이 제32조제2항의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③ 자료 등 제출명령 특례

- 대상을 “문서” 외에 정보를 포함한 “자료”(이하 “자료등”)으로 확대
- 자료등 신청의 방식, 목록제출 및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 규정 준용

제정안

제34조(자료등 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자료(「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정안

- ② 제1항의 자료등 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자료등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등. 다만, 제5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가 제1항에 따라 자료등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345조, 제346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 ④ 법원은 자료등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등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등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등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청구원인 사실의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자료등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및 불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는 “자료등”으로 본다.

④ 자료 등 제출명령 위반 시 효력

- 자료등 제출명령제 실효성 확보 위해 위반 시 제재 강화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자료등의 기재·현상·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당

사자가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현상·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자료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제정안
제35조(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등의 기재·현상·내용은 자료등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자료등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등의 기재·현상·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등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⑤ 상대방이 증거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명확화

-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의 효과를 준용

[4]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

①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한국형 증거개시제)

-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마련

제정안
제43조(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송 전 증거조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관할· 신청에 대한 재판 마련

②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 본안 증거조사 절차 적용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집단소송 증거조사 특례 및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절차가 적용되도록 절차 근거 마련
-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증거조사는 집단소송 소 제기 후 집단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

제정안

- 제48조(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법 제3장 및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을 준용한다.
- ②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집단소송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 ④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보낼 수 있다.

③ 증거유지명령제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의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증거유지명령제 도입
- 신속한 절차 진행 및 증거 확보 위해 증거보전 및 증거유지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제한

제정안

- 제47조(증거유지명령) ①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문서와 검증·감정목적물에 한한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1항 기재 증거를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유지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원본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증거유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증거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증거유지명령 위반 시 제재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 및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 시 효력 준용

제정안

제52조(증거유지명령 위반의 효과) 상대방이 제47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정안

- 제1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원은 결정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7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소 명령 등

-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조사 후 법원의 집단소송 제소명령 및 증거조사 비용부담 근거 마련

[5] 국민참여재판

- 집단소송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① 대상사건

-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규정

제정안

제53조(대상사건) ① 제15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참여재판 진행 관련 당사자 의사 확인

- 집단소송 특성 고려하여, 대표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 대표당사자 복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및 구성원의 의견제출 기회 마련

제정안

제53조(대상사건) ② 대표당사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56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정안

제55조(대표당사자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

- ②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의사(제7항·제8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의사를 포함한다)는 전체 대표당사자의 수의 과반수의 의사에 따른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배심원 평결의 효력

-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도록 규정(형사재판과 동일)

※ 다만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④ 기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비고
제5조(대상사건)	제53조(대상사건)	집단소송 허가결정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54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손해배상소송
제7조(필요적 국선번호)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55조(대표당사자 의사의 확인)	대표당사자 등
제9조(배제결정)	제56조(배제결정)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57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3조(배심원의 수)	제58조(배심원의 수)	청구금액 기준
제14조(예비배심원)	제59조(예비배심원)	
제15조(여비·일당 등)	제60조(여비·일당 등)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제61조(배심원의 자격)	만 19세 이상
제17조(결격사유)	제62조(결격사유)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63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고등학생 제외
제19조(제척사유)	제64조(제척사유)	구성원 등 반영
제20조(면제사유)	제65조(면제사유)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제66조(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67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68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제69조(선정기일의 진행)	
제25조(질문표)	제70조(질문표)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71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비고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제72조(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73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29조(이의신청)	제74조(이의신청)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75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76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32조(배심원의 해임)	제77조(배심원의 해임)	
제33조(배심원의 사임)	제78조(배심원의 사임)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79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80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6조(공판준비절차)	제81조(변론준비절차)	
제37조(공판준비기일)	제82조(변론준비기일)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제83조(변론기일의 통지)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제84조(소송관계인의 좌석)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85조(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86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2조(선서 등)	제87조(선서 등)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제88조(변론절차의 갱신)	
	제89조(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제90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손해배상 반영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제91조(평의 등의 비밀)	
제48조(판결선고기일)	제92조(판결선고기일)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제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제94조(불이익취급의 금지)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95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96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비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97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6] 제6장 : 분배절차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분배절차와 동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비고
제39조(분배법원)	제98조(분배법원)	
제40조(권리실행)	제99조(권리실행)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제100조(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101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제102조(분배의 기준 등)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103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104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105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제106조(분배계획의 고지)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제107조(분배계획의 변경)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108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109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1조(잔여금의 공탁)	제110조(잔여금의 공탁)	
제52조(분배보고서)	제111조(분배보고서)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112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제113조(분배종료보고서)	
제55조(잔여금의 처분)	제114조(잔여금의 처분)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15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116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8조(추가 분배)	제117조(추가 분배)	

[7] 시행규칙

- 소송절차법인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마련

[8] 벌칙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벌칙 외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내용에 따른 벌칙 조항 마련

V

시행시기 및 적용례

-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 국내외* 소송절차법 개정 적용례 사례 참조하여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 * '02년 전부 개정 「민사소송법」 및 '18년 獨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은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

※ 소송절차 안정 위해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적용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참고 1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 제기 현황

사건내용	소 제기	경과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09. 4.	·'10. 2. 소송허가결정 ·'10. 4. 화해허가결정 ·'12. 1. 분배종료
ELS 만기일 증가조작	'10. 12.	·'12. 5. 소송불허가결정 ·'15. 4. 대법원(재항고) 파기환송 ·'15. 11. 소송허가결정
	'11. 12.	·'16. 3. 대법원 소송허가 확정 ·'17. 2. 화해허가결정 ·'17. 4. 분배계획안 인가 ·'19. 5. 분배종료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11. 10.	·'13. 9. 소송허가결정 ·'16. 11. 대법원(재항고) 소송허가 확정 ·'18. 7. 13. 1심 판결(일부인용 - 피고 책임 10% 인정) ·'19. 2. 15. 항소심 판결(항소기각) ·'20. 2. 27. 상고심 확정(일부인용)
ELS 만기일 증가조작	'12. 3.	·'16. 2. 소송허가결정 ·'16. 6. 대법원(재항고) 소송허가 확정 ·'17. 1. 본안 1심 판결(인용) ·'17. 7. 항소취하(확정)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13. 10.	·'15. 2. 소송허가결정 ·'16. 6. 대법원 소송허가 확정(재항고 기각) ·'20. 9. 1심 선고(원고 청구기각)
시세조종	'13. 12.	·'18. 8. 22. 소송허가결정
	'13. 12.	·'18. 8. 27. 등 항고 ·'18. 11. 20. 소송허가 확정
	'13. 12.	·'19. 1. 22. 화해 종결(1,342명; 14억9,077억원) ·'19. 3. 12. 분배계획안 인가

사건내용		소 제기	경과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부정거래행위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14. 06.	·'16. 9. 소송불허가결정 ·'18. 7. 5.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19. 10. 28. 서울고법 허가결정 ·'20. 3. 25. 소송허가 확정
	부정거래행위	'14. 07.	·'18. 1. 5. 불허가결정 ·'18. 1. 26. 즉시항고
	회계감사 의무 위반	'16. 01.	·'16. 4. 대표당사자 선임결정 ·'18. 11. 20. 소송불허가결정(124. 확정)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17. 09.	·'17. 11. 23. 대표당사자 선임결정 · 허가재판 진행 중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I

추진 배경

- 가습기 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에서 보듯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
- 회복되지 않는 피해 유발을 감수한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얻어진 이익을 위법행위자로부터 박탈하여, 악의적인 위법행위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
- 실효적 피해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추진

II

「상법」상 도입의 의의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 도입 위해 「상법」으로 도입
- '11. 3.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이래, 「제조물 책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약 20개 법률을 통해 국내 수용된 제도
- 그런데, 분야 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①도입 여부에 따른 분야별 형평·②법률 별로 적용대상·요건 및 효과

에 차이가 존재

- * 도입 법률의 대부분이 적용대상 행위를 한정하고 있고 주관적 요건을 “고의·과실” 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곤란
-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 있고, 통일적·안정적 운용 및 효과적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해 일반법 제도로 도입할 필요
- 주로 이윤추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악의적 위법행위의 유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거래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

Ⅲ 도입 내용

- “영업행위” 과정에서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영업행위 과정에서 이윤 획득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적용
 - 고의·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
 - “상인”은 일상 용어의 “상인”이 아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상법」 제4조·제5조)
 - ※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상법」 제2조)
 - ➡ 따라서, 모든 민사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상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 적용
-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 손해의 5배 한도의 배상책임

-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억지력과 충분한 위법수익 제거력 확보 위해 5배를 한도로 설정
-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남용 방지 위해 소송으로써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III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

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20. 11. 현재)

법률명	책임주체	대상 위법행위	주관적 요건	기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	- 부당한 대금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부당감액 - 기술자료 유용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	- 차별적 처우	명백한 고의· 반복	조정· 중재 또는 시정명 령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 차별적 처우(기간제법 준용)	(상 동)	(상 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 분실, 도난, 누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5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20. 8.부터 개인 정보법· 신용 정보법 으로 이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	-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 유발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자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법률명	책임주체	행위유형	주관적 요건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	- 허위·과장정보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 보복조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사업자단체	- 담합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환경보전법	사업자	-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 유발	고의·중과실	3배
특허법	특허권·전용 실시권 침해자	- 고의적인 침해행위	고의	3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 고의·무과실(입증책임 전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탁기업	- 보복행위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자	-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고의	3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	- 상품대금감액 금지, 상품 반품금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행위자	- 산업기술침해행위	고의	3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5배

소비자 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변웅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목 차

1.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2.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소비자 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안 보완 건의 사항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p>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분쟁조정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소극적 참여와 조정결과 불수락시 대응 방안 없음 • 분쟁조정 대상의 법률상 제한(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사업자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 회피 가능성 • 집단적 분쟁조정의 한계(예: 라돈 침대사건, 의료건조기 사건, 5G사건 등) •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resource 한계 • 사업자의 비협조 또는 약정 불이행시 추가적 소송절차 및/또는 강제집행절차 불가피
<p>행정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기관의 조사 및 재량권에 의존 • 행정처분 절차에 소비자가 직접적, 공식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움 • 행정처분의 실효성 부족(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 강력한 행정처분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부기관의 부담(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직접 관련 없음(과징금/추징금은 국고귀속) •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최종 결정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p>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사건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이 어려움 • 소비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움(비용, 시간, 노력의 부담) • 소비자로서는 사업자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 어려움 • 소비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금액의 한계 •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어려움 • 소비자 관련 소송 사례가 적고 (소액사건이라) 판결문도 별로 없어서 소비자 법의 이론적/실무적 발전이 적고 예측 가능성 낮음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엄격한 소송허가 절차와 금전청구 제외로 인하여 소비자피해 구제가 어려움
<p>형사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대상의 제한 •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량권에 의존 • 형사 처벌을 위한 엄격한 입증의 어려움("고의"의 입증 등) • 형사처벌의 실효성 부족(벌금, 집행유예, 하위직원 처벌 등) • 사법기관의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징역선고 등) •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직접적 관련 없음 • 형사처벌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시 형사소송으로 최종 결정

5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1)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간의 극단적인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공개적 비판, 항의, 시위, 집회, 불매운동 등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 커짐
→ 명예훼손, 모욕, 업무집행방해 등 추가적 법률 분쟁으로 확대
- 소비자 분쟁조정 경험상, 소비자분쟁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감정 싸움이 되면 해결은 더욱 힘들어짐
- 소비자 불만은 정치적 이슈가 되어 정국안정에 대해서도 부담 줄 수 있음
- 소비자피해를 개별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여만 하는 문제의 발생

6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2)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에게 잘못된 Signal을 줄 우려가 있음

- 소비자에게는 법적 절차보다는 비공식적 절차에 따른 압력 행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문제행동소비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기업에게는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임시 방편적으로 해결하거나 피해 소비자 보다는 정부에 대한 로비에 더욱 신경 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음 → 근본적 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선진국 소비자보다 덜 보호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음
- 정부에게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잘못 관여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또는 소비자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오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 있음

7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은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분쟁해결 제도 및 민사소송 제도를 완비하는 것에 불과함(민사소송법의 특별법적 의미)
- 이는 그 동안 제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특히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
- 소비자단체소송의 경험상,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resource(시간, 금전, 인력)가 한정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을 쉽게 제기하기는 힘들 것임
- 소비자단체소송의 경험상,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또는 로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초기 비용의 상당수를 부담해야 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협조할 소비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집단소송을 쉽게 제기하기는 힘들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집단소송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분쟁조정 경험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질 손해만 배상되면 충분할 것임
- 소비자분쟁조정 경험상, 소비자 피해배상으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임

9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배상 가능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R&D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AI, Big Data, IT기술과 접목한 소비자 Risk 조기 발견 및 해결 메커니즘 구축 기대 (예: 증권집단소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도가 제고됨)
 - 외국기업들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업 내 소비자 담당 부서의 지위 향상 및 역할 증대
 - 문제 발생시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의 협의와 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기존의 소비자 구제 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10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계속)
 -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판결문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한 법 이론 및 실무가 발전되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임
 - 집단소송 전문가들의 배양으로 국내외 집단적 법률분쟁에 효과적 대응 가능
- ➔ “집단행동 보다는 집단소송” 선택
- ➔ 소비자, 기업, 정부간의 비정상적인 충돌보다는 법적 소송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11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안 보완 건의 사항

소비자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보완 건의사항

전체적 보완 건의 방향: 일반적 집단소송과 다른 소비자 집단소송의 특수성 반영 요망 (특례규정 or 소비자기본법 or 시행령 등에 반영)

법무부안	보완 건의 사항
소비자집단 소송의 별도 정의 없음	소비자집단소송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의 정의 규정(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 중점)
집단소송대상을 "손해배상청구"에 국한	소비자가 대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전지급 청구"로 확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을 집단소송 허가 요건으로 규정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별도의 집단소송허가 절차를 두지 말고 '각하' 사유로 기재하거나 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총원의 권리실현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추정 효력 부여

13

소비자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보완 건의사항

법무부안	보완 건의 사항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규정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가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소비자단체소송 원고 적격 참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요건으로서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법상 이해관계충돌이 없는 변호사이면 되며,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소속의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
소송허가 신청시에 '총원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함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총원의 범위에 대한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기재' 할 수 있거나 '추정되는 총원의 범위'로 명시

14

소비자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보완 건의사항

법무부안	보완 건의 사항
집단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에 효력을 미침 (opt-out 방식)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집단소송절차와 달리 '공통의무확인 절차'를 별도로 두어서 사업자의 책임이 확인된 후에 소비자가 참여신청을 하도록 하는 'opt-in'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집단소송의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만을 규정	변호사 외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적극 참여한 소비자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소비자집단소송을 위하여 국가가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필요
인지액의 상한 5000만원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인지액 상한 500만원으로 감액

15

소비자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보완 건의사항

법무부안	보완 건의 사항
가압류 관련 별도 규정 없음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와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가압류신청의 경우 추정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을 명시하면 되고, 지급보증서면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 필요)
조정 관련 별도 조항 없음	집단소송을 통한 집단적 소비자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집단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의 효력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음

16

감사합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오길영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집단적 피해 사건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가슴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함. 모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에 의한 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임.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절차도 복잡함. 집단적 피해는 해당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1대 국회에서도 김종민, 박주민, 이학영, 전해철, 오기형,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활성화 논의가 이뤄짐.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음.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함.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함.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함.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임.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임.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함.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음.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룰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가 수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가 미뤄지고 있음.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함.

1. 인지액의 상한액 : 수정 의견

1) 법무부 안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인지액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함. 항소심의 경우 금액의 1.5배, 상고심의 경우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 남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대를 설정함.

2) 문제점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지한 것으로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할 요소임.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일 것이므로 인지액 상한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임.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 100억 원을 청구할 경우, 경실련 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을 적용(소가 5천만 원)하여 '23만 원'임. 그러나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지액이 (소송 목적의 값 ×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 + 55만5천 원)의 1/2이므로 약 '1천 7백만 원'임. 패소 시

감당해야 하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짐.

- 지난 국회를 비롯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에서 인지액 상한을 500만 원 혹은 1천만 원으로 한정할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인지액 상한을 다른 발의안보다 높게 설정했는데, 남소 가능성은 소송허가 요건을 판가름하며 통제할 요소임.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됨.

3) 경실련 의견

-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인지대 부담으로 인한 집단소송 활용의 장애를 없앨 필요

- 인지액 참고 법안 (21대 국회 발의안)

- 인지액 상한 1천만 원 : 박주민 의원 법안, 오기형 의원 법안
- 인지액 상한 5백만 원 : 이학영 의원 법안
-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법안

법무부 안	경실련 의견
<p>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p> <p>②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 만원으로 한다.</p> <p>③ 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p>	<p>(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p> <p>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u>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u>으로 본다.</p>

2. 집단소송 허가 기한 명시 : 수정 의견

1) 법무부 안

- 소송허가 기한에 대해 설정하지 않음.

2) 문제점

-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룰 방법이 없어, 피해구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그동안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년이 지날 동안 소송허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 실제로 소송을 신청하고 5년이 지나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안이 필요함.

3) 경실련 의견

- 실효성 개선을 위해 소송허가의 기한을 설정함.
-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104106)
: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안	경실련 의견
(내용 없음)	<p>(소송허가절차)</p> <p><신설>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u>3개월 이내</u>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u>1개월 연장</u>할 수 있다.</p> <p>이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u>소송허가 결정</u>을 한 것으로 본다.</p>

집단소송 3법 도입 필요성과 재계 주장에 대한 반박

조형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집단소송 3법의 도입 필요성

(1) 참여연대가 함께 해온 집단소송 관련 활동들

- 경인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1996),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집단 환불소송(1998), 현대 전자 주가조작 사건 손해청구소송(1999),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소송(2000), 집단소송법 제정청원(2000),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2000-2003), 멜라민 우유 파동 대응(2008), LPG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손해청구소송(2010), 휴대폰 보조금 부풀리기 손해소송(2012),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손해소송(2014), 19대 국회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2014),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소송(2015), 가습기살균제 공동행동 및 옥시 불매운동(2016), 20대 국회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2017), 5G 불통사태 공동분쟁조정 신청(2019), 21대 국회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2020) 등

(2) 기존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한계

- 집단소송 범위가 협소하고 소송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소제기 자체가 쉽지 않음
- 2005년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된 후 15년 동안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불과, 2건은 소송허가 결정을 받지 못해 중단되었고 화해종결 3건, 원고승소는 2건 뿐임
- 입증책임의 어려움.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경우 본인이 피해당사자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수사나 조사결과가 없으면 피해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려움
- 기업의 불법·과실을 입증한 자료도 개개인인 원고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손해액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음

- 징벌적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하도급 등 일부 법률에 도입되어 있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낮음.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근거로 이뤄진 손해배상 판결은 총 69건이나,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건은 7건에 불과하고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1건만 손해가 인정됨. 이마저도 3배 손해가 인용되지 않고 1.5배에 그침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박광온 의원실 자료)

2.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 정부안은 참여연대가 기존에 요구해온 소비자집단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임.
- 다만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법행위 확인이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청구소송 등 확인청구소송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고, 보전소송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필요함
- 심급에 따른 인지대 증액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소송비용 특례 규정 필요 : 과도한 변호사 보수비용의 부담으로 집단소송 제기가 어려울 질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소송목적의 값도 인지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징벌적 손해제의 경우,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③항 “배상액” 을 “손해의 배수”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 적극 고려해야 함

3. 재계 주장에 대한 반박

- 소송비용 증가 → 생명, 안전, 재산, 개인정보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필요, 오히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용 감소 발생 - 만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있었다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은 출시 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가해기업이 부담하여 비용들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을 것임
- 남소의 우려 - 집단소송제 도입시 동종의 소송이 산발적으로 다수 진행될 수 없고 하나의 소송만 대응하면 되므로 소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 소송개시 절차가 엄격해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우려 적어, 필요하다면 안전점검 등에 대해 중기부나 중기중앙회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5. 관련 기사

- [2020 국감]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5년간 단 1건 인용, 아주경제 2020.10.06.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6085634089>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의 3법 입법 토론회

일시 |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min@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